

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중목욕장  
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3 월 10 일

여수시장 권오봉 

여수시 조례 제1723호

붙임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## 여수시 공중목욕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중목욕장”이란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.
2. “노인”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3. “섬 지역”이란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을 말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설치)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·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·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(洞) 지역 중에서 목욕장이 없는 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 중 “공중목욕장”을 “제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목욕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노인(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노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읍·면장”을 “읍·면장(제2조 단서에 따라 동지역 중 섬 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말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이장”을 “이장 및 마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조의2(정의)</u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공중목욕장”이란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을 말한다. 2. “노인”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3. “섬 지역”이란 「섬 발전 촉진 법」 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을 말한다.
<u>제2조(설치)</u>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·면 지역에 공중목욕장(이하 “공중목욕장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	<u>제2조(설치)</u>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·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·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(洞) 지역 중에서 목욕장이 없는 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.
<u>제3조(명칭 및 위치)</u> <u>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.</u>	<u>제3조(명칭 및 위치)</u> <u>제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목욕장-----</u>

제4조(사용대상) 여수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공중목욕장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노인(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 아닌 시민은 노인의 사용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· 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읍·면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관내 이장 대표

3. ~ 5. (생략)

⑤ (생략)

제4조(사용대상) -----  
-----  
---. --- 노인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읍·면장(제2조 단서에 따라 동지역 중 섬 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말한다)---

④ -----  
-----  
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 이장 및 마을 -----  
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